

의안번호	2202413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3.9.2.
추 계 번호	24B27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 4의2.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	의무규정
2	안 제62조의2(질병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가(이하 “질병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질병휴가를 주어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제1항의 질병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는 질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질병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질병휴가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액(이하 “상병급여”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액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제3항에 따라 지급된 질병휴가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봄(제4항)	의무규정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근로자가 질병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질병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제7항)	의무규정
		국가는 질병휴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제8항)	의무규정
		질병휴가의 신청방법·절차 및 질병휴가급여의 지급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9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1호(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안 제62조의2(질병휴가)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연간 60일 범위의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 질병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62조의2제1항 및 제2항)
 - 국가는 질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질병휴가급여”)을 지급할 수 있음
 - － 다만, 질병휴가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412호) 제49조의2제3항¹⁾에 따른 “상병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안 제62조의2제3항),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음(안 제62조의2제5항)
 - 개정안의 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질병휴가 사용자 수 및 사용기간과 질병휴가급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의 이유로 추계하기 곤란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412호)

안 제49조의2(상병급여) ③ 상병급여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기 전 12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한다)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일액”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일당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상병급여일액”이라 한다)은 소득일액에 100분의 66.7을 곱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첫째, 개정안에 따른 질병휴가급여의 지급 대상은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나, 현시점에서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어 장래에 발생할 실제 질병휴가의 사용자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질병휴가급여의 지원단가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질병휴가 사용자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들의 통상임금을 예측할 수 없음
- 셋째, 개정안은 질병휴가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상병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상병급여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